



수험소식 및 수험자료

# 2019년도 제35회 입법고시 공고

## 1.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

시 험 명	직 류	선발예정인원	합 계
제35회 입법고시	일반행정	6명	16명
	법 제	3명	
	재 경	6명	
	사 서	1명	

※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와 그 소속기관입니다.

## 2. 시험과목

직류	제1차시험(선택형)	제2차시험(논문형)
일반 행정	헌법 언어논리영역	필수(4) : 행정학, 행정법, 경제학, 정치학 선택(1) : 정책학, 지방행정론(도시행정 포함), 정보체계론, 조사방법론(통계분석 제외), 민법(친족 상속법 제외)
법제	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	필수(4) : 헌법, 민법, 형법, 행정법 선택(1) : 상법, 형사소송법, 민사소송법, 세법
재경	영어 (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 한국사	필수(4) : 경제학, 재정학, 행정법, 행정학 선택(1) : 회계학, 통계학, 국제경제학, 상법, 세법
사서	(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	필수(4) : 도서관경영론, 자료조직론, 정보검색론, 참고봉사론 선택(1) : 사회과학서지, 행정법, 경제학, 정치학

- ※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계산합니다.
- ※ 제2차시험의 법률과목은 시험장에서 법전을 배부합니다.

### 3. 시험방법

- 제1차시험 : 선택형 필기시험
  - PSAT의 경우 각 과목 5지선다형 40문항/ 과목당 90분
  - 헌법과목은 25문항(5지선다형 / 25분)으로 60점 미만일 경우 다른 과목 점수에 상관없이 불합격이며, 제1차시험 합격선 결정 시 헌법과목 점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.
- 제2차시험 : 논문형 필기시험
- 제3차시험 : 면접시험
- ※ 이전 회의 입법고시\*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 입법고시의 동일한 직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며, 자세한 사항은 '11. 기타'에서 안내합니다.
- \* 일반행정, 법제, 재경 직류는 제34회 입법고시, 사서 직류는 제33회 입법고시

### 4. 응시자격

구 분	내 용
결 격	○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○ 「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」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(국회채용시스템 [자료실]의 “응시자격 정지사유 관련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안내” 참조)
연 령	○ 20세 이상인 자(1999. 12. 31. 이전 출생자) ○ 「국가공무원법」제74조(정년)에 해당하지 않는 자
자격·경력	○ 일반행정직, 법제직, 재경직은 제한 없음 ○ 사서직의 경우 제35회 입법고시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1·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
※ 응시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제35회 입법고시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제3차시험 시행예정일) 기준	

## 5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구 분		일 시	비 고
공 고		1. 31.(목)	국회채용시스템
원서접수		2. 7.(목) 09:30 ~ 2. 14.(목) 17:00	국회채용시스템 (관련서류 우편제출)
제1차시험	시험장소 공고	3. 8.(금)	국회채용시스템
	시험일자	3. 16.(토)	
	합격자 발표	4. 12.(금)	국회채용시스템
제2차시험	시험장소 공고	4. 12.(금)	국회채용시스템
	시험일자	5. 20.(월) ~ 5. 24.(금)	
	합격자 발표	7. 19.(금)	국회채용시스템
제3차시험	시험장소 공고	7. 19.(금)	국회채용시스템
	시험일자	7. 29.(월) ~ 8. 2.(금)	
최종합격자 발표		8. 5.(월)	국회채용시스템

※ 제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상기 일정 외에 인·적성 검사 일정이 별도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.  
 ※ 응시원서 접수취소 마감일은 2. 17.(일) 21:00입니다.  
 ※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시험장소·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(<http://gosi.assembly.go.kr>)에 공고 또는 게시합니다.

## 6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으로 접수)

## 가. 접수방법 및 시간

- 접수방법 : 국회채용시스템(<http://gosi.assembly.go.kr>)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
  - ※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  - ※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.
- 접수시간 : 응시원서 접수기간(2019. 2. 7.(목) ~ 2. 14.(목))
  - 2. 7.(목) : 09:30 ~ 24:00
  - 2. 8.(금)~ 2. 13.(수) : 00:00 ~ 24:00
  - 2. 14.(목) : 00:00 ~ 17:00 (원서접수 마감일)
  - ※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○ 응 시 료 : 10,000원\* =

\* 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(본인명의 계좌만 가능)·카드결제·휴대폰 결제 중 선택

○ 기 타 :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계좌이체·카드결제·휴대폰 결제 비용)이 소요되며,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(JPG, 200KB미만)이 필요하며,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.

※ 저소득층 해당자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)는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. 단,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미결제 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. 기타 저소득층 해당자의 응시수수료 결제방법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○ 접수취소 : 2. 7.(목) ~ 2. 17.(일) [단,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(2. 17.)에 한해 21:00까지]

※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카드결제·휴대폰결제·계좌이체비용)은 환불이 불가합니다.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(저소득층 해당자 제외)이 불가합니다.

○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(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직류(일반행정, 재정)만 해당).

※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[자료실]에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사서직 응시생 중 최종시험예정일(제3차시험 시행예정일) 이전까지 필수자격증을 취득 예정인 경우,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아래와 같이 입력

자격증	“자격증 종류”	기관	“발급기관”
자격증번호	“취득예정”	취득예정일자	“취득예정일자”

[예시]

자격증	2급 정사서	기관	한국도서관협회
자격증번호	취득예정	취득예정일자	2019-05-15

○ 응시원서 기재사항(선택과목, 지방인재 여부 등) 오기로 인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,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※ 응시직류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합니다.

○ 응시표 출력기간 : 2. 22.(금) ~ 8. 5.(월)

## 7.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

### 가.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

시험명	TOEFL		TOEIC	TEPS		G-TELP	FLEX
	PBT	IBT		18.5.12. 전 시험	18.5.12. 이후 시험		
일반 응시자 기준점수	530	71	700	625	340	65 (Level 2)	625
청각장애 2·3급 응시자 기준점수	352	35	350	375	204	43 (Level 2)	375

※ 청각장애 2·3급 응시자의 경우,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(말하기 포함)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·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국회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하며, 원서 접수·취소기간 및 추가 등록기간(2019.3.18. ~ 3.20.)에만 가능합니다.

### 나.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

-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
-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하여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 성적은 인정됩니다.

### 다. 성적 소명 방법

-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, 등록번호(수험번호),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,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을 통해 성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(ex. 2017년 1월에서 2017년 4월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의 경우 등)에는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라.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

-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, 성적표를 위·변조하는 등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
## 8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

### 가. 기준점수(등급)

시험의 종류		기준점수
한국사능력검정시험	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(한국사능력검정시험)을 말한다.	2급 이상

※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국회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하며, 원서 접수·취소기간 및 추가 등록기간(2019.3.18. ~ 3.20.)에만 가능합니다.

### 나.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

-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제1차시험 시험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(등급)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,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
### 다. 성적 소명 방법

-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, 인증번호,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.
- 필요한 경우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,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# 라.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
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, 성적표를 위·변조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
## 9. 지방인재 채용목표제

### 가. 지방인재 채용목표제

-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(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(일반행정 직류, 재경 직류에 적용))

**나. 시행기간 :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**

**다. 지방인재의 범위**

-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하거나 재학·휴학 중인 자(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)
-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(<http://gosi.assembly.go.kr>) 자료실의 「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」를 참고

**라.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(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)**

-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%입니다.
-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 예정인원의 10% 이내로 제한됩니다. 다만, 제1차시험에는 추가합격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.

**마. 실시방법**

- 제1차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 합격자의 비율이 30%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,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하고,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.
-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 합격자의 비율이 30%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,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,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
**바. 증빙서류 제출**

-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자는 증빙서류(졸업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)를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*20. 기 타**

-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국회인사규칙」, 「국회공무원 임용시행규정」, 「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릅니다.

- 이전 회의 입법고시\*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 입법고시의 불합격한 동일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(영어·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경과와 관계없음).
- \* 일반행정, 법제, 재경 직류는 제34회 입법고시, 사서 직류는 제33회 입법고시  
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응시원서 제출 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의 변경은 가능합니다.
- 입법고시 응시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원서접수·취소기간(그 이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이전 성적이 발표되는 자는 추가접수등록기간(2019. 3. 18.(월) ~ 2019. 3. 20.(수))에 반드시 성적을 등록하여야 하며, 미등록 또는 응시자의 귀책으로 해당 성적의 인증번호 등에 오기·오타 등이 있어 해당 기관에서 성적 인증 불가 시 해당시험 성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입법고시 제1차시험의 1교시 시험시간은 130분\*으로,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 
\* 헌법과목 시험시간(25분) ⇒ 과목전환 시간(15분) ⇒ 언어논리과목 시험(90분)
-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중 현역 임용대상자는 육·해·공군의 장교로 임용혜택이 부여됩니다(「병역법」 제59조).
-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격 여부 판단, 합격 결정 및 기타 시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응시자로부터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※ 기타 문의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(02-788-2081)으로 문의하거나, 국회채용시스템(<http://gosi.assembly.go.kr>) [시험정보] 및 [시험안내]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